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온라인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 | 최항섭
닉네임 언급에 대한 게시중단요청 심의결정 리뷰 | 조소영

기획동향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 이대호

법제동향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 이진규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최진응

해외 자율규제 주요 소식

미국의 콘텐츠 규제 한국과의 차이점은
: All Things in Moderation 2017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 나현수

이용자섹션

눈 앞에 다가온 5G 시대,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 한세희

문화시평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서평) | 김훈건

온라인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 : “닉네임언급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 사안” 심의결정관련

최항섭 /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Keyword>

익명성, 닉네임, 정체성, 들뢰즈, 푸코

닉네임 ‘□□’ 관련 글 게시 중단에 대한 심의결과는 온라인공간의 가상정체성과 현실공간의 실제정체성간의 거리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으로 지지될 수 있다. 온라인공간이 일상생활로 들어오게 되면서 가장 커다란 특성이자 이슈가 된 것은 그 공간의 ‘익명성’이다. 현실공간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개인은 온라인공간에서 자신의 실제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구성하며 그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 발현을 시도한다. 본 사안은 온라인공간에서 완전한 익명이 아닌 특정한 닉네임인 ‘□□’으로 신형 스마트폰을 계속 구입하는 자신의 소비행태를 올린 한 이용자가 자신의 행동을 비난하는 다른 이용자의 게시글들에 대해 분노하여, 이 글들의 삭제를 요청한 사안이다.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그 이용자가 완전한 익명에 가까운 게시자명인 ‘○○’등을 사용하지 않고 ‘□□’이라는 고유한 닉네임을 사용하고 특정 온라인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했다는 사실이다. 많은 온라인사이트에서는 글을 올리기 위

해서 반드시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다. 이용자들은 자신의 익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 등의 게시자명으로 글을 올리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종종 완전한 익명성이 아니라 특정한 닉네임으로 아이디를 만들면서 소위 ‘고닉을 파는 경우’(고정 닉네임을 만드는 경우 : 회원가입을 해야 함)가 있다. 이 ‘고닉’들은 그 온라인공간에서 유명인으로 활동하면서 때로는 지지를 얻기도 하고 때로는 집단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고닉’을 파는 경우에는 다른 이용자들이 그 닉네임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용자가 닉네임에 애착을 갖고 자신과 동일시하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이 사안에서 또 하나 흥미롭게 봐야 할 것은 ‘□□’ 닉네임 이용자가 다른 이들은 쉽게 할 수 없는 신형 스마트폰 사재기를 하면서 이를 온라인공간에서 ‘자랑하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이는 온라인공간과 소셜미디어 공간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자신의 사생활노출을 통한 사회적 지지얻기’ 행위이다. 페이스북 등에서 자신의 사생활을 멋진 모습으로 구성하여 이를 사진과 글로 올리고 폐

이스북 친구들로부터 ‘멋지다’라는 댓글과 ‘좋아요’라는 지지를 얻는 것은 이제 일상적으로 볼 수 있는 소셜미디어의 특성이다. 이러한 행위의 배경에는 현대사회에서 경쟁에서 소외된 우울감을 극복하고 자신이 ‘주목받는 존재’가 되고 싶은 욕구가 있다. 페이스북의 경우에는 특히 사진들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서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악성댓글 등이 사전에 차단되어 있고, 주로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본 사안과 같은 익명적 온라인공간에서는 다른 이들의 글들에 대해 보다 자유롭게 대응할 수 있다. 악성댓글도 얼마든 지 남길 수 있다. 다른 커뮤니티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공간에서 이용자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면서 익명의 사람들에게 ‘인정’과 ‘지지’를 받고자 한다. 페이스북에 올리지 않고 익명적 온라인공간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자신의 글의 내용이 사회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다. 본 사안의 닉네임 ‘□□’ 역시 소비행태가 사회적, 윤리적으로 쉽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다. 사안의 설명에 보면 이 이용자는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는 데, 치열한 경쟁 속에 많은 한국인들이 사회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경험을 하고 있지만 학생이라는 신분은 그 정점의 경험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 닉네임 ‘□□’의 지속적인 소비행태 자랑 글들은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한편, 익명적 온라인공간에서 다른 이용자들로부터 ‘지지’를 얻는 글들의 특징은 읽은 이에게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고 다른 이용자들에게 상대적 우월감을 선사한다는 것이다. 여행에서 고생하는 이야기, 연애에서 실패한 이야기들이 대표적

이다. 그러나 자신이 행복하고 즐거운 경험을 한 이야기, 다른 이들이 쉽게 할 수 없는 것을 성공했다는 이야기는 다른 이용자들에게 질투심을 유발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미 다른 이들이 자신보다 잘나 보이는 것을 견디기 힘든 한국사회성원들의 특징을 볼 때, 온라인 공간에서 ‘잘난 척’하는 이용자는 집단적 공격의 대상이 된다. ‘관심종자’ 등으로 비하하면서 악성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는 것이다. 집단적 공격은 먼저 그 ‘관심종자’ 이용자가 현실에서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불법적 방법이 동원된다. 온라인 공간이 아무리 익명적 공간이라고 해도 소셜미디어, IP주소 등의 해킹을 통해 여러 연결고리를 맞추면서 결국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아내버린다. 그리고 현실공간에서 그가 얼마나 보잘 것 없는 이인가를 밝혀내서 온라인공간에서의 ‘멋진 정체성’은 모두 허구라는 것으로 비하하고 집단적 만족감을 얻게 된다.

한편 익명의 이용자들로부터 집단적 공격을 받는 이는 자신의 원래 목적인 익명의 이용자들로부터의 지지와 완전히 상반되는 반응으로 인해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다. 특히 자신이 ‘루저’로 표현되며 인신공격을 당하는 것에 대해 분노해서 처음에는 이에 대응을 하지만 대응을 할수록 더욱 집단적 공격이 확대되는 것을 경험한다. 결국 이러한 집단적 공격에 당해낼 수 없는 판단이 서게 되며, 이에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감에 사로잡힌다. 또한 반복적인 악성 댓글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실제로 열등한 존재는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하게 된다. 이는 현실공간에서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자신감마저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한다. ‘언어’는 상호관계의 기본적인 수단인데, 단어와 문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게 된다. 악성 댓글로 인해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한 연예인들 역시 이 심리적 폭력을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게 되는 이용자는 자신에게 심리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익명의 이용자들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욕구를 갖게 된다. 연예인들은 실명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해 악성 댓글을 단 이용자들에게 명예훼손 고소 등으로 대응을 한다. 이는 복수를 공적권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실명의 개인이 행하는 익명의 군중에 대한 복수 구도와 익명의 개인이 행하는 익명의 군중에 대한 복수의 구도가 다르다는 점이다. 실명의 연예인은 경찰과 같은 공권력을 통해 익명의 군중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기가 쉽지만, 자신 역시 실명이 아닌 익명, 혹은 닉네임과 같은 가상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활동하는 이용자의 경우 익명의 군중에 대해 대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본건의 경우 닉네임이 있지만, 그 닉네임이 그 본인의 실제 정체성과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가의 문제가 핵심인 것이다. 이는 본 사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정책위원회에서 언급한 ‘특정성’의 문제와 맥을 같이 한다. 위원회에서는 닉네임으로 특정성이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리고, 그 결과 요청자의 ‘닉네임 언급 관련 게시물 중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는 온라인공간의 정체성의 익명성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하는 것으로 더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먼저 근대의 시기까지 개인은 사회와 제도라는 구조 속에서 ‘하나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성, 가족에서의 역할, 사회에서의 역할들로 구성된 현실공간에서의 정체성은 대단

히 고정적인 정체성이었다. 성전환 수술에 대한 터부시도 대단히 강했으며, 비단 수술이 아니더라도 남자는 남자처럼, 여자는 여자처럼 행동해야 한다는 사회적 규범에 개인이 순종해왔다. 가족에서 남편, 아내, 부모, 자녀의 역할 역시 그 개인의 고정된 정체성이었다. 이는 근대에서 비대화된 구조의 권력으로 인해 개인이 위축되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고정된 정체성의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이름’이다. 모든 개인은 1개의 실명만을 국가로부터 인정받았다. 여권, 신분증 등에 자신의 본명이 적혀 있어야 한다. 제도적으로 1개의 실명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한편 프랑스 철학자 들뢰즈(Deleuze)에 의하면 근대사회부터 강조되어온 ‘고정된 정체성’은 개인의 삶에서 다양성을 앗아가고 자유를 상실시켜 결국 개인을 피폐하게 만든다. 고정된 정체성은 개인에게는 죽음과 다름없다.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여받은 정체성 안에서 머물면서 결국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지 못한다. 들뢰즈에 의하면 개인의 정체성을 본질적으로 고정적인 것이 아니고 유동적인 것이다. 야누스의 모습, 지킬과 하이드에서 나타나는 이중적인 정체성에 대해 하나의 정체성은 옳고, 다른 하나의 정체성은 틀리다는 시각은 근대가 개인에게 강요한 이분법적인 구조제약이다. 개인은 이러한 이분법적 정체성 구조에서 자유로워져야 한다. 푸코(Foucault) 역시 근대는 개인의 생각과 행위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구분하면서 개인을 억압하였다고 비판한 바 있다. 자신에게 주어진 정체성이 아닌 다른 정체성을 찾을 때 개인이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 실험은 정보사회에 들어와 온라인공간에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실험은 닉네임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현실

공간에서와는 다른 정체성을 스스로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하지만 이 다른 정체성은 현실공간의 나의 정체성과 다를 뿐이지, 나의 본연의 정체성의 일부이다. 현실공간에서 발현하기 어려웠을 뿐이다. 나의 욕구, 욕망이 현실공간에서 구현되면 발생하게 될 위험들을 감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윤리적, 제도적 제약이 느슨한 온라인공간에 그 욕구와 욕망들이 새로운 닉네임 기반 정체성을 통해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의 정체성으로 변신하기도 하며, 기혼자가 미혼자로 변신하기도 한다. 성 정체성, 가족내의 정체성의 변화는 현실공간에서 윤리적 비난이 대상이 되지만 온라인공간에서 이러한 비난이 불가능하다. 실제 정체성이 어떤 것인지 서로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 내부에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발현하고 싶은 욕구는 가득하다.

익명인 ‘○○’이 아닌 ‘□□’이라는 닉네임은 이 새로운 정체성을 발현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욕구가 상대적으로 강했음을 보여준다. 그렇지 않다면 ‘○○’ 뒤에 숨어서 글들을 올렸을 것이다. 이용자는 닉네임 ‘□□’의 소비행태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을 일정부분 즐겼을 가능성이 높다. 그랬던 만큼 집단적 공격에 더욱 실망하고 분노한 것이다. 이러한 소위 ‘고닉’ 이용자는 그 아이디어가 자신이라고 믿는다. 온라인공간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 글을 올리고 이를 기반으로 다른 이용자와 소통한다. 때로는 지지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비난을 받기도 하는데 모두 현실공간보다는 훨씬 더 나에게 주목하고 있다는 것 사실에 스스로 흥분한다. 본 사안에서 당사자 이용자는 자신의 닉네임과 현실공간의 자신의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수준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현실공간에서 자신의

실명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보다 온라인공간에서 닉네임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매력적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 이용자는 닉네임과 자신의 현실 정체성을 동일시하는 정도가 대단히 높았다.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공격에 대해 피해의식과 복수심이 강하게 나타났던 것이다.

그러나 온라인공간의 닉네임과 같은 가상 아이디는 현실공간의 실제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나의 실제의 정체성 그 자체는 아니다. 개인은 자신의 또 다른 정체성을 또 다른 닉네임으로 얼마든지 발현할 수 있다. 이는 현실의 실명을 기반으로 하는 정체성은 쉽게 바꿀 수 없는 것과는 다르다. 본 사안의 경우 닉네임 ‘□□’을 사용한 이용자는 ‘□□’이라는 닉네임을 포기하고, 새로운 닉네임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그 개인의 다양한 정체성은 ‘□□’이라는 닉네임 1개가 아니라 또 다른 다양한 닉네임으로 발현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닉네임언급에 대한 게시중단 요청’에 대해 이를 받아들지 않은 KISO의 결정은 “온라인공간에서의 닉네임과 같은 가상적 정체성은 현실 정체성의 ‘일부’일뿐, 그 현실 정체성 자체가 아닌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정체성일 뿐인 점을 인식” 한 정당한 결정이라고 본다. KISO JOURNAL



닉네임 언급에 대한 게시중단요청 심의결정 리뷰

조소영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Keyword>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아이디나 닉네임, 당사자 특정성

1. 심의결정의 주요내용

가. 사건 개요

이 사안은 회원사 커뮤니티에서 ‘□□’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했던 회원(일반인 청소년)이 자신이 탈퇴한 이후 자신의 게시물에 대한 댓글들에 대해 임시조치를 요청한 사안이다. 즉 회원사의 게시판에 작성된 게시물 4건이 신청인의 닉네임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조롱했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닉네임의 사용자가 본인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게시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명예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3조에 근거하여 삭제를 요청한 것이다.

나. 근거 규정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규정 제2장은 게시물에 관한 정책을 규정하고 있는데,

- 1) 1.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는 당사자임을 밝혀야 한다.
2. 명예훼손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3. 해당 게시물의 URL을 적시해야 한다.
- 2) 제3조

그 구체적 내용 중 제1절의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임시조치 등에 있어서 인터넷상의 게시물로 인한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자가 일정한 요건¹⁾을 모두 갖추어 회원사에게 삭제, 반박내용의 게재 또는 임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²⁾.

다. 결정 내용

이러한 임시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우선 본 사안의 신청인이 임시조치 등의 처리제한 대상인가의 여부를 먼저 살펴보았는데, 일반인 청소년이 신청인이라는 점에서 처리의 제한대상이 되는 ‘정무직공무원 등의 공인’이라거나 ‘공직자 등의 공인’에 해당되지 않고, 해당 게시글의 성격 역시 공중의 관심사와는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동 규정 제3조의 해당 여부를 주된 심의 내용으로 하였다.

그런데 신청인의 주장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데, 먼저 닉네임 사용이 개인정보 유출

이라고 주장하였고, 다음으로 게시물의 내용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정책위원회는 닉네임 그 자체가 개인정보라고 볼 수 있는가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순한 닉네임을 언급한 것 자체로는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라고 보지 않았다. 다음으로 명예 훼손 주장 부분에 대해서는, 소명자료에 의할 때 문제된 상황은 온라인에서의 평가 저하일 뿐 이것을 바탕으로 실제사회에서의 명예의 저하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이미 탈퇴한 회원으로 온라인상에서의 정체성을 스스로 포기한 점, 그리고 임시조치를 요청하는 표현들에서 욕설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논의하여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2.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닉네임 사용의 법적 의미 : 명예훼손의 대상성 여부

가. 닉네임(nickname)

닉네임이란 사전상으로는 인터넷이나 PC 통신상에서 사용되는 애칭³⁾으로 풀이된다. 실제 본인과의 동일성을 입증하는 실명(實名, 성명)에 대비되는 개념인 별명도 이와 한가지라고 할 수 있다. 별명(別名)은 사람이나 사물의 실제 이름 대신 쓰이는 이름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별명은 주로 겉모습이나 성격, 행동, 말씨, 경력 등을 바탕으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는 작명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다. 다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의 닉네임은 현실에

서의 이름이나 별명과 달리 인터넷 사용자의 심리변화를 반영하는 언어기호로서 흔히 수의성을 띠고 있다고 평가된다⁴⁾. 왜냐하면 현실생활에서의 이름은 사회문화적인 관습, 종교, 민속 등 여러 가지 문화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지만, 닉네임은 사용자의 취미나 도덕수준, 심리적 특징 등이 반영되고 명명 당시의 감수성에 따르게 될 뿐 아니라 시간이나 생활환경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도 있는 등 복잡한 인격특성을 지닌다고 볼 것이어서 상대적으로 수의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닉네임 사용과 관련하여 법적 쟁점화 될 수 있는 문제의 상황은 온라인 커뮤니티의 특징 중 하나인 사용자들이 닉네임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받는다라는 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사용자에게 대한 정보는 닉네임과 오직 이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작성하는 게시글과 댓글,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 뿐이다. 때문에 닉네임 사용자 중 일부는 특정 개인에 대한 비방이나 욕설 또는 커뮤니티 내 갈등을 초래하는 분란성 게시글 작성을 조장하는 등의 부정적인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다⁵⁾. 이런 점에서 온라인 공간에서의 익명성 보장의 범위와 정도, 필요성에 이르는 적지 않은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 더, 닉네임 사용자도 온라인 공간에서 자신의 ID나 닉네임 자체의 정체성과 명예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가 추가되어 논의되고 있다.

3) 전산용어사전편찬위원회(2011), 『컴퓨터인터넷IT용어대사전』, 서울: 일진사

4) 강용택(2011), 닉네임의 언어특징에 대하여, 『국어교육연구』제27집, 136면

5) 박상현, 박석(2018), 온라인 커뮤니티 사용자의 행동 패턴을 고려한 동일 사용자의 닉네임 식별 기법, 『정보과학회논문지』제45권 제2호, 166-167면

나. 인터넷 상의 ID 자체의 특정성 여부와 관련된 판례

1) 헌법재판소 판례⁶⁾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NAVE R)의 뉴스 기사에 관한 네티즌 의견 게시판에 자신의 아이디(ID)를 이용하여 의견을 게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성명불상의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아이디(ID)를 지칭하며 모욕적인 감정표현을 담은 댓글을 달자 이들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로 고소하였다. 그런데 검찰은 위 고소사건을 수사한 후 2006. 10. 20. 불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고소인이 누구인지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없어 혐의 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위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이 정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2007. 4. 20. 위 불기소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다수의견

법정의견은 먼저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은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이고⁷⁾, 명예의 주체인 사람은 특정한 자임을 요하지만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한 바 없는 허위사실의 적시행위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 판단하여 그것이 어느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인가를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⁸⁾고 전제하였다. 그리고 인터넷상의 댓글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의 모욕죄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명예훼손 또는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⁹⁾을 종합해 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ID)를 가진 사람이 청구인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렵고 달리 이를 추지할 수 있을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청구인으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인 청구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았다.

(3) 반대의견¹⁰⁾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은 청구인이 피고소

6) 헌재 2008. 6. 26. 2007헌마461, 판례집 20-1하, 442

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도739 판결

8)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9) 문제된 뉴스 기사와 이에 대한 청구인의 의견, 피고소인들의 댓글 내용, 해당 인터넷 게시판의 이용 범위 등

10) 재판관 조대현

인들을 인터넷 ID로만 특정하여 고소한 것에 대해 검사가 피고소인들의 행위가 명예훼손 행위나 모욕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인터넷 ID만 가지고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피해자가 누구인지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고소를 각하하였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뉴스 기사에 댓글을 달려면 네이버의 회원으로 등록하고 고유의 ID를 정해야 하며, 그 ID는 네이버 회원의 고유 명칭으로서 회원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인터넷 ID는, 사이버 공간 밖에서 사용되는 성명과 마찬가지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그 ID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시키는 기능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인터넷 ID와 그 사용자의 성명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관리자에게 등록되므로, 인터넷 ID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의견은 인터넷 포털사이트 안에서 이용자의 인터넷 ID 표시에 기한 익명성(匿名性)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더욱 확대시키는 기능을 하는 반면에 인터넷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인격침해행위(명예훼손·모욕)의 피해가 사이버 공간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다는 것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도 가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 가해자와 피해자도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행위나 모욕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도 피고소인들이 청구인의 ID를 지정하면서 그 댓글의 내용을 비

난하는 댓글을 작성하여 청구인의 댓글이 게시된 뉴스 댓글란에 게시하였으므로, 피고소인들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이 ID로 지정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것이라면 그 피해자는 그 ID를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즉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ID만을 지칭하여 그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그 ID에 의하여 특정되는 사람의 외부적 명예가 공연하게 훼손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고, 인터넷 ID를 사용하는 사람의 성명이나 실체를 일반인이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고 하여 그 ID 사용자의 외부적 명예가 침해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은 인터넷 이용의 현실과 동떨어진 형식논리라고 하였다.

2) 법원 판례¹¹⁾

이 사건은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피고인이 채팅방에서 피해자의 ID를 지칭하며 수차례에 걸쳐 욕설 등의 모욕적인 언사를 공연히 자행한 것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가 주된 판단쟁점이었던 판결이다.

판결에서 재판부는 닉네임만으로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인데,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를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지만, 그 특정을 위하여 반드시 사람의 성명을 명시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성명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11) 2015. 3. 20. 선고 2014고정3756 판결(인천지방법원 판결)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구체적으로 피해자의 아이디 사용기간, 채팅방 접속 사용자들과 피해자의 친분 관계,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표현들이라는 점, 해당 아이디의 가입자정보 등을 통해 피고인이 지득한 피해자에 대한 정보의 존재, 인터넷 아이디의 기능¹²⁾ 등을 종합하여 보았고,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아이디로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3. 맺음말

온라인 커뮤니티 내에서의 활동이 개인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은 현실세계에서의 효과와 결코 다르지 않다. 오히려 그 파급성과 제한의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피해구제를 요청하는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크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다. 때문에 온라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가 오프라인 상에서의 그것과 구분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된다.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처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라는 점과 이러한 보호법익의 주체가 존재해야만 한다는 점에서 명예의 주체인 사람이 특정한 자임을 요한다는 점은 동일하기 때문이다. 다만 온라인 공간에서의 ID 나 닉네임 사용자가 -가해자이건 피해자이건 간에- 당사자로서의 특정성이 인정

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과 그 공간에서의 ID의 기능,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정체성이 특정한 개인에게 있어 중요한 정체성일 수 있다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의 정책 등이 닉네임 등을 변경하기 어렵게 하거나 고유하게 유지하게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정체성의 일부로 보아야 하는 경우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온라인 공간 내에서의 아이디나 닉네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특정성 여부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나 커뮤니티의 고유한 정책적 차별성까지도 반영한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판단이어야만 할 것이다. 즉 아이디나 닉네임만을 지칭한 경우일지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 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누구를 지목하는가를 알아차릴 수 있을 정도라면 당사자가 특정되었다고 판단해야 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유형의 심의나 판결에서는 당해 아이디나 닉네임이 특정성을 가진 것으로 인정할 만한 특수한 사유를 찾는 작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해당 아이디를 사용한 기간, 누군가에 의한 인터넷 아이디 이용자의 특정성 인지 가능성, 관련 표현의 명예훼손의 실질성, 공개된 일부의 정보로 인한 개인정보 인식가능성, 해당 아이디의 유일성, 해당 커뮤니티의 고유한 정책내용 등이 그것이다.^{KISO JOURNAL}



12) 인터넷 아이디는 인터넷 공간 안에서 그 아이디를 사용하는 사람을 특정지우는 기능을 하고, 인터넷 아이디와 그 사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은 그 인터넷 사이트에 등록되므로 인터넷 아이디를 알면 그 사용자가 누구인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음

‘뉴노멀 시대’, 방송 통신 규제의 올바른 방향

이대호 / 성균관대학교 인터랙션사이언스학과 교수

<Keyword>

인터넷, 규제, 뉴노멀법

필자가 어렸을 때 인터넷이라는 것은 그저 신기한 ‘장난감’에 지나지 않았다. 컴퓨터를 키고, 터미널 창을 띄워서 인터넷에 접속하면, 괴상한 접속 소리와 함께 터미널 창에 글씨들이 새겨졌다. 그 당시 인터넷이라는 것은 멀리 떨어져있는 사람과 통신할 수 있는 전화기 이외의 추가적인 수단일 뿐이었고, 모르는 사람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해주었다는 것 이외에는 저화질의 사진 한 장을 다운로드 받는데 10분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등 꽤나 불편한 장난감이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의 시간 동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많이 변화했으며, 최근에 발생한 대부분의 변화의 중심에 인터넷이 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기 힘들 것이다. 지난 2015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에서 구글의 에릭 슈미트 회장은 인터넷이 사라질 것이라고 발언하였는데¹⁾, 이는 현대인들이 삶 속에서 언제 어디서든 인터넷에 접속해있기 때문은 앞으로는 사람

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터넷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인터넷이라는 것은 당연하고 중요한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이렇게 인터넷이 확산되고 또 중요한 존재가 되다 보니,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상에서는 한번 작성한 글, 한번 업로드한 사진 등 모든 자료들이 손쉽게 저장되고 공유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글이나 사진이 유통되고 또 그 기록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개인의 특정 기록을 삭제하거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Right to forgotten)’라는 신종어까지 생겨나게 되었다.

디지털 유산 상속의 이슈도 있다. 친족 관계가 있는 사람 중 한 쪽이 사망할 경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은 다른 한 쪽으로 상속이 된다. 그렇다면 사망한 사람의 인터넷 계정은

1) 매일경제, [최은수 기자의 미래이야기]구글 CEO의 예언 “인터넷이 사라진다”...그 다음 미래는? 2015.01.26.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5&no=81980>

어떻게 되어야 할까? 실제로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망 학생들의 부모들은 페이스북에 자식의 계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만 있을 뿐, 사망에 따른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해 정해진 바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인터넷 세상에서 새로운 이슈들이 발생함에 따라 인터넷 산업을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단연 ‘뉴노멀법’이 아닐까 싶다. ‘뉴노멀법’이란 자유한국당 김성태의원이 지난 2017년 10월에 발의한 사전적 규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포괄하여 일컫는 개념이다. ‘뉴노멀법’은 인터넷 사업자, 특히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은 대형 인터넷 포털 사업자와 관련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을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부가통신 사업자로 정의”하고 이들 부가통신사업자들을 경쟁상황평가 및 회계 정리 의무의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중 매출액 및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

정 규모 이상인 자”의 경우 정보제공을 매개할 때 불법 정보의 유통 차단 및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의무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요 인터넷 포털사업자들로 하여금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다. 정리하면 ‘뉴노멀법’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 부가통신 역무를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주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의 경우 통신사업자들 (KT, SKT, LGU+ 등)과 마찬가지로 경쟁상황평가를 받게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 의무 부과와 함께 방송통신사업자들처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충분한 고민 없이 만들어진 인터넷 규제는 오히려 역기능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첫째, ‘뉴노멀법’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 및 전자우편, 커뮤니티, 사회관계망 서비스, 콘텐츠 등의 부가통신 역무를 이용자에게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시 NHN(지금의 네이버)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며 인터넷 포털 사업자를 ‘1S-4C’²⁾로 획정했던 사례는 이미 2009년에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4년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에서는 지속적인 연구의 결과에 기반하

2) 1S-4C: 검색(Search)서비스, 이메일(email), 메신저(messenger) 등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서비스, 홈페이지, 온라인카페 등 커뮤니티(Community) 서비스, 스포츠/금융/뉴스/게임 등 각종 콘텐츠(Contents)서비스, 온라인 쇼핑 등 전자상거래(Commerce)서비스를 통틀어 ‘1S-4C 서비스’라고 칭함.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0807231755225&code=920100 참고

여 “포털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의 존재, 혁신이 빠르고 동태적인 인터넷 서비스의 특성으로 인하여 포털 서비스의 범주를 검색서비스에 한정 짓는 시장획정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은 다양한 포털의 서비스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³⁾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둘째, ‘뉴노멀법’에서는 인터넷 포털 사업자들에게 기존의 방송통신사업자들에게 경쟁상황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업자는 방송사업자나 통신사업자와는 그 출생부터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 KT, SKT, LGU+와 같은 통신사업자를 전기통신사업법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간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 하에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즉,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통신사업자들은 그들의 독점적 사업 지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 상태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며, 이는 방송사업자 역시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 사업자의 경우는 전기통신사업법에서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되며, 부가통신사업자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만 함으로써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는 경쟁과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의 환경에 노출되어있다.

셋째, ‘뉴노멀법’의 규제 조항들을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구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대한 역차별 이슈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원클릭 간편 결제의

이슈,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들의 과세 이슈 등 많은 경우에 정부의 규제는 오히려 국내 사업자들의 발전을 저해해왔다. 고유 명칭의 규제 조항들 역시 글로벌 인터넷 사업자에게 적용되기 힘들 것이며 결국 국내 인터넷 사업자들만을 규제하는 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국내의 SNS 시장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빼앗긴지 오래이며, 와이즈앱의 조사에 따르면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스마트폰 사용시간 점유율에서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는 유튜브에게 뒤쳐지고 있다. 국내 인터넷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는 이러한 현상을 가속화할 뿐이다.

지금의 인터넷은 융합의 활성화와 함께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다양한 역기능이 발생하면서 올바른 인터넷 문화를 정립하고 향후 인터넷 산업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규칙과 규제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인터넷 산업의 규제는 현재 인터넷 산업의 현황과 사업자들의 특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 그리고 국내의 사업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의 인터넷 환경은 유선에서 무선으로, 사람에서 사물로, 국내에서 글로벌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 변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이다. 검색 중립성, 플랫폼 중립성 등 현재 인터넷을 둘러싸고 있는 철학과 원칙을 잘 만들어왔을 때 앞으로도 인터넷 강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KISO JOURNAL

3) 출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16,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EU GDPR 주요 내용의 검토

이진규 / 네이버주식회사 CISO · CPO (이사)

<Keyword>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 역외적용

1. 개요

오는 5월 25일 본격 적용을 앞두고 있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은 기존에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기준이 되어 왔던 Data Protection Directive(Directive 95/46/EC)와는 여러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전자 는 ‘Regulation’이다. 회원국이 이의 실행을 위 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지 않아도 그 자체 로 유럽연합 회원국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 는 구속력 있는 법규범(a binding legislative ac t)이라는 의미이다. 그에 반해 후자는 유럽연 합 회원국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법규범이지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서는 개별 회원국이 각국의 사정에 맞는 법 률을 제정하여야 한다. 구성 측면에서, 전자 는 173개의 전문(Recital)을 제외하고도 11장 99조나 되는 방대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후 자는 7장 34조의 간략한 구성에 그친다. 내 용 측면에서 전자에 비해 후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의 개략적인 가이드스를 제공 하는데 그친다. 이에 반해, GDPR은 개인정보 처리 전반에 걸쳐 ‘성근 그물’을 쳤으나, 개인

정보를 처리하려면 GDPR 규정을 피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는 주로 전 세계 매출액의 4%까 지 부과될 수 있는 벌금(Administrative Fine)이 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DPO, Data Protection Officer)의 지정, 또는 넓은 지리적 적용범위 (소위 ‘역외적용’)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로 GDPR은 개인정보 보호 를 어떻게 해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해 답을 원칙에 기반한 위험관리 관점에서 제시 하고 있다. 주목해야 할 GDPR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GDPR의 주요 내용

1) 책임성 원칙(Accountability Principle)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Deloitte에 의하면 책 임성 원칙은 개인정보보호 원칙을 준수하는 것을 담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 원칙은 투명한 개인정보보호, 프라이버시 정책과 이용자 통제, 외부의 관계자 및 정보

보호 당국에 증명 가능한 높은 수준의 책임을 운영하기 위한 내부적 명료성과 절차 등을 보장하는 “문화적 변화”를 의미한다고 한다.¹⁾

GDPR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과 수단을 정하는 주체인 ‘컨트롤러(controller)’는 6대 개인정보 처리 원칙 - (1) 처리 적법성, 공정성, 투명성 원칙, (2) (수집) 목적 제한의 원칙, (3) 개인정보 최소화 원칙, (4) 정확성 원칙, (5) 저장 제한의 원칙, (6) 무결성 및 기밀성 원칙 - 을 모두 준수하는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하며, 특히 이를 준수하는 것을 증명(demonstration)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6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의 준수를 증명해야 하는 것을 책임성의 원칙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서도 GDPR의 6대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대동소이한 여러 원칙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GDPR의 경우 해당 원칙들을 준수하지 않으면 직접적으로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선언적’ 조항들과는 결이 다르다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책임성 원칙의 입증을 위해 GDPR은 산업계의 행동강령(industry code of conduct)이나 승인된 정보보호 인증(approved certification) 등을 실행가능한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GDPR의 수범자는 Privacy by Design and Default 원칙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전체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적절히 보호되고 있음을 스스로 ‘문서화(documentation)’하여 입증할 수도 있으나 이는 비용이나 노력 측면에서 매우 어려운 일이다. GDPR은 산업계의 행동강령이나 인증 메커니즘을 통해 GDPR을 준수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즉 책임성 원칙의 준수를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2) 개인정보처리의 적법성 확보

상술한 6대 개인정보 처리 원칙의 준수 외, 개인정보 처리를 위해서는 GDPR이 정한 6가지 적법성 요건 가운데 최소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해당 개인정보 처리가 적법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GDPR Article 6(1), Recital 39-41)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요건은 (1) 정보주체의 동의, (2) 계약의 이행, (3) 법률 의무의 준수, (4) 중대한 이익의 보호, (5) 공익 내지 공공기관 해당, (6) 정당한 이익 등이 있다. 일반 개인정보가 아닌 ‘민감 개인정보(special categories of personal data)’의 경우 총 9가지 적법성 요건이 존재한다.

특히, GDPR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나라에 만연한 ‘정보주체의 동의’는 가능한 경우 적법성 요건으로 선택하는 것으로부터 ‘지양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영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ICO,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는 GDPR 동의 가이드란스에 대한 대중 의견 청취 문서에서 GDPR에 의한 동의 절차를 구현할 때, Unbundled(다른 동의와 연계하지 않을 것), Active Opt-in(정보주체의 행위에 의한 동의를 받을 것), Granular(상이한 개인정보 처리건 마다 동의를 구분할 것), Named(동의를 요구하는 주체를 밝힐 것), Documented(동의를 입증할 기록을 남길 것), Easy to Withdraw(동의 철회를 쉽게 할 것), No imbalance in the relationship(강제되지 않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

1) Deloitte(2017. 4. 19.), GDPR Top Ten: #2 Accountability principle, Available: <https://www2.deloitte.com/nl/nl/pages/risk/articles/gdpr-top-ten-2-accountability-principle.html>

한 동의를 구할 것) 등 7가지 주요 동의 변화를 제시하면서, 이와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동의를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에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 적법성 확보는 다른 메커니즘을 고려한 후에 차 순위로 선택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우리나라의 그것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GDPR을 적용 받는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행태에 근본적인 변화가 요구된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특정 적법성 메커니즘을 선택한 이유를 ‘개인정보영향평가(DPIA,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를 통해 상세히 문서화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3) 높은 수준의 처벌

핵심 개인정보 처리 원칙의 미준수,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개인정보의 국외 전송 메커니즘 위반 등 GDPR 규정의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감독기관은 2천만 유로 또는 직전 회계연도 전 세계 매출액의 4%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으며, GDPR 규정의 일반적 위반으로 판단되는 경우 1천만 유로 또는 매출액의 2%까지를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는 내용은 GDPR의 주된 ‘인식 제고(Awareness)’를 위한 다양한 캠페인이나 뉴스 기사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수준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인해 GDPR의 준수가 필요하다는 ‘공포 마케팅’이 일부에서 성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GDPR은 이와 같은 벌금의 부과가 강제사항이 아니라 감독기관의 판단에 의해 부과될 수 있는 재량(discretionary)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벌금은 “효과적이고, 위반행위에 비례해야 하며, 추가적인 위반 행위를 중단시키는데 효과적(effective, proportionate and dissuasive)”이어야 한다. (Article 83(1)) 만약 사소한 위반이거나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자연인에게 비례를 상실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벌금 대신 징계(reprimand)가 부과될 수도 있다. 또는, 사안에 따라 감독기관은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suspension)도 명할 수 있기 때문에, GDPR의 위반이 항시 벌금 부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다.



4) 강화된 정보주체의 권리

GDPR은 크게 정보주체의 8대 권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1) 적절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열람권, (3) 정정권, (4) 삭제권(소위 ‘잊힐 권리’), (5) 처리제한권, (6) 개인 정보 이동권, (7) 반대할 권리, (8)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 등이 있다.

2)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2017. 3. 2), Consultation: GDPR consent guidance, Available: <https://ico.org.uk/media/about-the-ico/consultations/2013551/draft-gdpr-consent-guidance-for-consultation-201703.pdf>

다양한 정보주체의 권리 가운데 ‘잊힐 권리’로 잘 알려진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권이 행사되는 경우 컨트롤러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삭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그에게도 삭제요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개인정보 이동권은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직접 제공받거나,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기계판독 가능한 형태(machine-readable)’로 제공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는 전적으로 자동화된 의사결정 로직에 의한 결정에 의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최근 들어 논의가 되고 있는 소위 ‘설명 받을 권리(right to explanation)’에 대한 논의도 바로 이 자동화된 결정 및 프로파일링 관련 권리의 내용에서 도출된 것이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으나, 실제 이는 ‘의사결정에 도달한 로직에 대한 설명을 획득할 권리’에 한정되며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3. 나아가며

상기에 서술한 내용 외에도 GDPR은 확대된 개인정보의 정의(특히, 개인정보의 가명처리의 명문화), 다수 규정의 프로세서(processor) 직접 적용, 개인정보 국외전송 메커니즘의 확립, 개인정보 유출통지제도의 도입, DPO의 지정, One-Stop-Shop의 도입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서 크게 주목할 만한 제도들을 도입하였다. Forrester가 공개한 2016년도 Privacy Heat Map에서 밝힌 전 세계 Privacy 이슈를 드러내주고 있는 3대 경향 가운데 2가지가 GDPR의 실행과 그것이 미치는 글로벌 레벨에서의 영향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GDPR의 주요 내용의 이해는 단순히 유럽에 진출한 기업의 숙제로 남는 것은 아니다. 우리 법제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미리 그 내용을 확인하고, 법제 개선 방향성을 논의할 필요가 여기에 있다. KISO JOURNAL



인터넷 개인방송 규제 동향과 입법적 검토 : 20대 국회를 중심으로

최진웅 / 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입법조사관

<Keyword>

제20대 국회, 인터넷 개인방송, 공적 규제, 자율 규제

1. 들어가며



국내에서 인터넷 개인방송의 제작 및 이용이 대중화 되고 있으나,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해 다수의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인터넷 개인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다수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규제의 강화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건전화로 가져올 수는 있으나, 다른 한편 인터넷상 자유로운 표현 행위를 위축시킨다는 비판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제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터넷 개인방송 입법안을 소개하고 각각의 규제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2. 인터넷 개인방송의 법적 지위와 책임

인터넷 개인방송은 법적으로 「방송법」의 적용을 받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에게 부여되는 각종 법적 규제 즉 공적 책임, 진입 규제, 사업자 자격 제한, 방송 심의 의무, 등급분류 의무, 방송 보존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다만,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개별법에서 각각의 법적 지위와 법적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기통신사업법」상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타 통신사업자(기간통신사업자, 별정통신사업자,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비해 법적 의무가 높지 않고, 나아가 진입 장벽도 낮아 등록제가 아닌 신고제로 운영되고 있다.

둘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일정 기준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인격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또한 불법·유해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정보를 삭제, 차단하도록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시정요구,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셋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아동·청소년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 발견 즉시 삭제 의무,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넷째, 「저작권법」상에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해당한다. 동법상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의 저작권 침해 신고를 받으면 해당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차단해야 한다.

3.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입법 동향

제20대 국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입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된 바 있다. 입법 개정안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박맹우 의원안(2017.8.30.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포함시켜 등록제, 청소년유해정보 및 음란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 실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음란물이 유통되고 있음을 인식하는 경우 즉시 삭제, 차단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정 명령,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송희경 의원안(2018.3.5. 발의)도 박맹우 의원안과 마찬가지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에 포함시키고 있다. 다만, 추가적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에게 지급되는 사이버머니의 한도를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설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은권 의원안(2016.10.17.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음란물이 유통됨을 명백히 인식하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등의 조치를

하여 해당 정보의 유통을 차단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는 모든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시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안(2017.9.26.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유통한 콘텐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성수 의원안(2017.11.24.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 있음을 명백히 인식한 경우 즉시 삭제 또는 차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김경진 의원안(2017.12.11. 발의)은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불법 정보가 유통되는 경우,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 정보를 유통하는 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4. 개정안에 대한 검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인터넷 개인방송 관련 법률 개정안은 대체적으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가 불법 정보의 유통을 인식하면 즉시 삭제 또는 차단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은권 의원안(2016.10.17. 발의), 김성수 의원안(2017.11.24. 발의), 박맹우 의원안(2017.8.30. 발의)]. 이를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유통되는 불법 정보가 사후적으로 즉시 차단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러한 강행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실제 사전적인 모니터링과 유사한 효과를 부여하게 되어 사업자에게 경영상 부담으로 작용한다. 나아가 사업자 스스로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과도하게 인터넷 방송 콘텐츠를 제한함으로써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더욱이 음란물뿐만 아니라 모든 불법 정보로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 규제의 대상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부담과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

둘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등록제 및 불법·유해정보에 대한 기술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다[박맹우 의원안(2017.8.30. 발의), 송희경 의원안(2016.10.17. 발의)]. 동 규정은 등록제와 등록 취소를 통해 불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고, 사후에 퇴출시킬 수 있다는 점, 기술조치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실효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보다 사업 규모가 크고 사회적 영향력이 강한 포털의 경우에도 부가통신사업자로서 지위와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 실시간 이루어지는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서 동법상 기술적 조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실효성 문제가 있다.

셋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일정 기간 저장하도록 의무화하거나[김성수 의원안(2017.9.26. 발의)], 이용자가 지불하는 사이버머니 한도를 지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송희경 의원안(2018.3.5. 발의)]. 먼저, 콘텐츠 저장을 일정 기간 의무화하는 경우, 이를 통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해당 콘텐츠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영세한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경우 실시간 콘텐츠 모두를 일정 기간 저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다음으로 이용자의 사이버머니 한도에 제한을 두는 경우, 이용자로부터 유료 상품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을 억지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의 경우 유료 상품 이외에 별다른 수익 구조가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 수익원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것은 인터넷 개인방송 시장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

넷째,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에게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시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이은권 의원안(2016.10.17. 발의)].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나타나는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사업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사업자에게 자체 가이드라인 제정 및 집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제재를 하는 것은 자율 규제의 근본적 성격과 충돌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5. 나가며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에서는 공적 규제를 강화하는 입법 방안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전반적인 인터넷 콘텐츠 규제가 높은 국내 현실에서, 현행 법적 규제의 집행을 위해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것은 사업자의 위축 효과뿐만 아니라, 순차적으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도 심히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현행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는 합리적인 공적 규제를 마련하고, 이러한 공적 규제를 어떻게 민간에서 실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입법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우선 입법적으로는 기존 인터넷 규제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행법상 불법 정보의 범위는 광범위한데, 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법적 규제를 집행하는데 있어 민간 사업자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공적 규제를 민간이 집행하는데 있어 실효성과 순응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입법 및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인터넷 개인방송이 갖는 자유로운 표현 행위를 보장하면서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 유통 환경을 조성하는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ISO JOURNAL

유럽연합의 불법 콘텐츠 대응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의미

선지원 / Universität Regensburg 박사과정

<Keyword>

불법 콘텐츠, 플랫폼 사업자, 투명성, 오남용에 대한 구제

1. 배경 및 목적

지난 2017년 9월 28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온라인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하여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 행위 원칙과 지침들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성격의 의견서¹⁾를 발표하였다.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불법 콘텐츠라 함은 테러리즘, 외국인 혐오 및 인종주의를 선동하는 내용으로서, 특히 적대 행위와 폭력을 부추기는 내용을 비롯하여, 아동 성추행 등을 표현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것 등을 의미한다. 집행위원회는 본 가이드라인의 서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의

경제적 중요성을 인정하고, 온라인에서 위와 같은 불법 콘텐츠를 억제하는 일이 디지털 경제 영역의 중심 과제이자 시급한 요청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하여 회원국에 수용 의무가 있는 유럽법 차원의 지침으로는 “성폭력, 아동성추행 및 아동포르노 퇴치를 위한 지침”²⁾, “테러리즘 방지를 위한 지침”³⁾, “시청각 미디어 서비스에 관한 지침”⁴⁾ 및 “전자거래에 대한 지침”⁵⁾이 있다. 유럽연합은 이밖에도 기타 다양한 규범⁶⁾, 가이드라인 및 결정

1) Mitteilung der Kommission an das Europäische Parlament, den Rat, den Europäischen Wirtschafts- und Sozialausschuss und den Ausschuss der Regionen - Umgang mit illegalen Online-Inhalten - Mehr Verantwortung für Online-Plattformen, COM(2017) 555 final.

2) Richtlinie 2011/93/EU vom 13. Dezember 2011 zur Bekämpfung des sexuellen Missbrauchs und der sexuellen Ausbeutung von Kindern sowie der Kinderpornografie, ABl. 2011 L 335/1.

3) Richtlinie (EU) 2017/541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März 2017 zur Terrorismusbekämpfung und zur Ersetzung des Rahmenbeschlusses 2002/475/JI des Rates und zur Änderung des Beschlusses 2005/671/JI des Rates, ABl. 2017 L 88/6.

4) Richtlinie 2010/13/EU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0. März 2010 zur Koordinierung bestimmter Rechts- und Verwaltungsvorschriften der Mitgliedstaaten über die Bereitstellung audiovisueller Mediendienste (Richtlinie über audiovisuelle Mediendienste), ABl. 2010 95/1.

5) Richtlinie 2000/31/EG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8. Juni 2000 über bestimmte rechtliche Aspekte der Dienste der Informationsgesellschaft, insbesondere des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s, im Binnenmarkt ("Richtlinie über den elektronischen Geschäftsverkehr"), ABl. 2000 L 178.

6) 예컨대 “인터넷에서의 불법 혐오표현 퇴치를 위한 행동규범(Verhaltenskodex zur Bekämpfung illegaler Hassrede im Internet)”

들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불법 콘텐츠 규제 환경을 보완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최근 반복하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자가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서들을 공표하고 있다.⁷⁾

집행위원회는 본 의견서를 통해 이러한 법적 환경에서 각 회원국의 행정기관과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들 사이의 협업을 통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특히, 불법 콘텐츠의 식별, 제거 및 재발 방지의 조치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구체적인 행위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즉,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유럽연합의 기관들 및 회원국이 관련 규범을 적용함에 있어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2.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조치

집행위원회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 조치를 탐지와 공지, 제거 및 반복 업로드 방지라는 세 가지 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가. 불법 콘텐츠의 탐지 및 고지

먼저, 불법 콘텐츠를 탐지하는 단계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비롯하여 관할 행정청 및 콘텐츠 이용자가 불법 콘텐츠의 빠르고 효과적인 탐지를 위해 행해야 하는 조치를 제시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불법 콘텐츠를 인지할 수 있는 방법에는 외부로부터의 정보 전달과 사업자 스스로의 적극적인 선제 조치가 있다.

외부의 정보 중 중요한 것은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행정청의 행정처분으로서 이 경우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를 제거하거나 차단해야 한다. 집행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그러한 국가 기관이 협업을 위해 구조적인 개선을 행해야 한다고 권고하면서, 이를 위해 양자가 온라인 콘텐츠와 관련하여 공동의 정책 형성을 위한 기술적인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사업자는 공적 주체 외에도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자, 권리자 또는 이용자의 통지를 통해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인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사업자와 제보자들과 협력과 정보 교환 역시 강조하며, 유럽 차원에서 신뢰성 있는 정보제공자의 기준을 구축할 수 있는 기준에 대해 검토할 방침임을 밝힌 바 있다. 플랫폼의 이용자도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고지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들이 불법으로 간주될 만한 콘텐츠를 어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적극적인 선제 조치를 통해 불법 콘텐츠를 발견하고 제거하는 일도 중요하다. 집행위원회는 전자거래에 대한 지침 제14조의 면책과 사업자의 적극적 조치와 관련하여 중요한 법적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동 지침 제14조 제1항은 이용자가 업로드한 불법 콘텐츠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면책받을 수 있는 요건으로, a) 사업자가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b) 사업자가 이를 인지 후 즉각 해당 정보를 제거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사업자가 선제적인 조치를 통하여 불법 콘텐츠의 존재를 알게 될 경우, a)목의 요건

7) 예컨대 COM (2016) 288 및 COM (2017) 228.

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사업자가 동조의 면책을 주장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집행위원회는 선제 조치가 있을 경우 b)목의 요건에 부합하게 되어 사업자에 대한 면책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며, 이러한 적극적 선제 조치가 전자거래에 대한 지침 제14조의 면책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나. 불법 콘텐츠의 제거

불법 콘텐츠 제거 단계에서 집행위원회가 강조하는 것은 플랫폼 운영 및 콘텐츠 제한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시스템의 남용을 방지하고, 일반적인 콘텐츠를 보호하는 것이다.

전자 거래 지침에 따르면 플랫폼 사업자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즉각” 시행해야 하므로, 콘텐츠의 삭제가 남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불법 콘텐츠에 대한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 집행위원회는 불법을 판단할 권한이 있는 공적 주체와 사업자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가지고, 원활한 정보 교환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따라 예컨대 유로폴의 “SIRIUS-Portal”⁸⁾과 같은 정보교환을 위한 수단을 구축할 것을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불법 콘텐츠 제거 절차의 투명성 또한 강조하고 있다. 먼저 사업자는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 조건 등에 불법 콘텐츠의 유형과 범위 등을 명확하게 적시함으로써,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나 정보접근성에 대한 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플랫폼에서 신고받은 불법 콘텐츠의 유형과 신고 건수, 해당 콘텐츠에 대한 대응 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정보들을 취합하여 통계화한 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콘텐츠 불법성의 오판에 대해서는 해당 결정을 취소할 수 있어야 하며, 대상 콘텐츠의 재업로드 역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악의적인 거짓 신고에 대한 조치 역시 마련해야 한다.

다. 불법 콘텐츠의 반복 업로드 방지

집행위원회는 불법 콘텐츠의 반복 업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불법 콘텐츠의 반복 방지 조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진다. 먼저 반복 업로드를 하는 행위자에 초점을 맞춘 조치로서, 플랫폼 사업자는 이용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거나 혹은 이용자를 플랫폼으로부터 비밀리에 차단(이른바 “Shadow banning”)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반복되는 내용에 대한 자동 필터를 마련하여 불법 콘텐츠의 재 업로드를 막을 수 있다. 집행위원회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러한 자동 차단 기술을 발전시키고 이용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러한 기술에 가역성(可逆性)을 부여하여 착오 등으로 인해 이루어진 차단 조치가 복구될 수 있도록



8) <https://sirius-portal.pfizer.com/>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3. 독일의 인터넷상 불법콘텐츠 관련 입법

위와 같은 유럽연합의 대응과 마찬가지로 독일 역시 인터넷상의 불법 콘텐츠에 대한 대응에 있어 위법한 내용의 콘텐츠 작성자에 대한 형사법상의 제재와는 별도로⁹⁾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법제화하고 있다. 즉, 통신 미디어법(Telemediengesetz: TMG) 제7조 이하의 규정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콘텐츠의 삭제 또는 차단 의무 및 관련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인터넷상의 선동과 가짜뉴스 등의 제재와 관련하여 과도한 제재로부터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측면에서의 주목할 만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소셜 네트워크에서의 법 집행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sdurchsetzung in sozialen Netzwerken: NetzDG)”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의무를 부여한다. 동법 제2조에 따라 연간 100건 이상의 불법 콘텐츠 삭제와 관련한 다툼이 있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운영자는 그러한 이의제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공개할 의무를 진다. 또한 제3조에 따라 이용자들이 위법한 표현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해 이의제기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하는 의무 역시 지게 된다.

4. 집행위원회 의견서의 의미와 시사점

집행위원회가 본 의견서를 통해 불법 콘텐츠에 대한 제재 방식 자체에 대해서 새로운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시사점을 찾을 만 한 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로 보인다.

첫째로, 콘텐츠 제재와 관련하여 플랫폼 사업자와 공적 주체의 협업을 강조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만을 강조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플랫폼 사업자의 적극적인 사전 조치를 촉진하는 방향의 법 해석을 제시한 일을 주목할 수 있다. 사인인 사업자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불법 콘텐츠에 대한 판단 기준 등에 대해 공적 주체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불법 콘텐츠의 퇴치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사업자에게 면책의 범위를 넓혀줌으로써, 보다 효과적이고 오남용이 적은 대응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콘텐츠 제재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배려 역시 의미를 가지는 사항이다. 콘텐츠에 대한 제재가 표현의 자유 침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당 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오남용 된 제재에 대해서는 확실한 복구 가능성을 보장한다는 점은 불법 콘텐츠에 대한 퇴치 노력 못지않게 중요한 일일 것이다. KISO JOURNAL

9) 본래 독일은 형법전을 통해 국가사회주의 등 위험적인 단체의 선전물을 유포하는 일(제87조), 그러한 단체의 표식을 사용하는 일(제87조의 a),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하는 표현(제89조의 a, 제91조), 범죄 행위의 공연한 조장(제111조) 및 범죄나 테러 단체의 구성(제129조 내지 제129조의 b) 등을 제재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이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표현될 때에도 형법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플러스’ 사태로 본 국내 공유경제의 미래 - 우버 철수 등 지속적인 규제 조치에 막히는 공유경제

이성엽 /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법학박사)

<Keyword>

공유경제, 카풀, 혁신, 규제

1. 들어가며

강력한 한파와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해짐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도로로 쏟아져 나오면서 혼잡과 매연이 심해지고 있다. 거기다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밤늦게 택시 잡기는 하늘에 별따기인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이처럼 국민들의 차량 이용 관련 불만은 극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는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차량을 공동으로 이용하면서 비용도 줄이고 매연 같은 공해도 줄이자는 차원에서 시작된 차량 공유경제가 상당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아직 우리는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최근 카풀앱인 플러스는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에 자가용 운전자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해왔다. 통상적으로 출근시간은 오전 5~11시, 퇴근시간은 오후 5~다음 날 오전 2시였지만 출퇴근 시간 자율선택제가 시행됨에 따라 고객이 출·퇴근 시간대(4시간씩)를 직접 설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하루 종

일 자가용 영입이 가능해진 진 것이라는 비난을 받았는데, 이에 대해 택시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것은 물론 서울시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는 여객운송사업법 제81조에 따라 유상운송을 불법 알선한 것으로 경찰에 조사를 의뢰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여객운송사업법에 대한 법령해석의 문제도 있지만 과연 입법적, 정책적으로 이러한 카풀 앱과 기존 택시사업자의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면서 소비자의 편익을 최대화하는 방안은 없을 것일까? 이하에서는 기술혁신과 규제에 관한 일반론을 살펴보고 이론적, 실질적 차원에서 본건의 경우 어떠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향후 공유경제의 미래와 전망은 어떠한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2. 기술혁신과 규제의 이론

신흥기술(emerging technologies)이나 신규서

비스에 대한 규제 개념부터 살펴보자. 신기술이란 다양한 기술들 가운데 근본적으로 새롭고 상대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기술로서 일정한 정도의 일관성을 가지고 오랫동안 존속하고, 이해관계자의 구성, 제도, 이해관계자와 제도 간의 상호작용, 관련된 지식생산방식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특정 영역이나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로서, 그 기술이 출현하는 현 단계에서는 정보 부족이나 기술에 대한 온전한 이해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 기술에 수반되는 리스크의 발생개연성, 정도, 내용 등이 불확실하고 모호한 기술이다.

신기술에 대한 규제란 신기술과 관련하여 정부기관이 공익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준이나 목표에 따라 다른 사람의 행위를 변화시키려는 데에 초점을 맞춘 시도로서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행위라고 할 수 있다.

기술발전이 통상 보다 나은 상태로의 변화라는 의미에서 혁신(innovation)을 동반하는 경우 정부는 이를 장려하고 촉진하는 정책 예컨대, 특허정책, 기술산업 지원정책을 실시한다. 다만, 신기술이 혁신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고 정부가 그 폐해가 시장기능에 의해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규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

카풀업이라는 기술혁신과 규제와의 충돌은 기본적으로 동일상품 내지 대체상품간의 신, 구사업자 간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택시사업자와 카풀업 사업자와의 이해충돌은 기본적으로 사업자 간의 경제적 대립이 중심

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업자 간 경제적 이익충돌 상황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정부 규제의 대원칙은, 해당 경쟁사업자 상호 간의 이익조정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시장 경쟁의 촉진과 이를 통한 소비자 효용 극대화라는 정책목표가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3. 카풀업 사례 분석

논란이 되고 있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는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유상으로 카풀을 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출·퇴근 시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카풀업을 둘러싼 쟁점 중 핵심은 본 조항에 정의된 ‘출·퇴근시간’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 인지다. 유연근무제가 확대되면서 카풀업 사업자들은 출·퇴근 시간을 가능한 유연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택시사업자는 이는 자가용으로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불법이며, 낯선 사람의 차량에 손님을 태우는 카풀 서비스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카풀업 사업자측은 차량 운전자의 프로필과 별점을 탑승 전에 확인할 수 있고, 차량등록증과 보험증서를 통해 철저한 신원확인 절차를 거친 운전자만 활동 가능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유연근무제에 따라 개인별로 출퇴근 시간이 다른 경우 특정한 시간을 선택하여 출퇴근 시간으로 보고 이 시간에 카풀을 허용하는 것은 법령의 문리해석상 불가능해 보이지 않는다. 물론 유연근무제에 따른 출퇴근 시간이라는 점은 회사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사후적으로 위법 사항이 발견된 경우 엄정한 제재를 취하는 것으로 법의 당초 취지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최소한의 안전규제를 조건으로 카풀 외에도 일반적인 차량공유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편익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전면적인 차량공유가 어려운 경우 지역별, 시간대별로 제한적인 차량공유도 생각해 볼 직하다.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규제 샌드박스가 이와 유사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4. 공유경제의 미래와 전망

글로벌 경제위기의 도래에 따라 차량, 숙박 공유와 같이 물건을 소유하기 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여유 자원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 쓰는 공유경제가 각광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내게 필요하지 않은 것은 남에게 빌려주고 내가 필요한 것은 남에게 빌려 쓴다는 아이디어에서 온 것이다. 이 아이디어가 ICT와 결합해 혁신을 가져온 것이 지금의 공유경제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과 연결된 스마트폰만 있으면 국경을 넘어 차량, 숙박 등의 수요를 공급자와 실시간 의사교환을 통해 해결하고 결제까지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공유경제는 수요자인 이용자에게는 호텔, 택시업체 등 전통기업보다는 저렴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급자인 이용자에게는 빈방이나 빈 시간이라는 유휴 자원을 사용해 부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줄 뿐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노동을 제공함으로써 여가의 활용을 가능하게 해준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성장과 일자리의 실현에도 공유경제가 하나의 해법일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먼저 자율적이고 역동적인 혁신을 보장해 소비자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어야 한다. 다만, 소비자 안전과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규제의 역할 역시 포기할 수 없다. 즉, 혁신과 규제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규제는 자율규제와 사후규제 방식이 주가 되는 것이 기술과 서비스 혁신에 유리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KISO JOURNAL

〈참고문헌〉

- 윤혜선, 신흥기술 규제(emerging technologies regulation) 연구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기술규제 시 고려요소를 중심으로, 행정법 연구 제49호, 행정법 이론실무학회, 2017.6.
- 이성엽, 공유경제(Sharing economy)에 대한 정부규제의 필요성- 차량 및 숙박 공유를 중심으로, 行政法研究 第44號, 2016.2.

- 이원우, “혁신과 규제: 상호 갈등계의 법 구조와 갈등해소를 위한 법리와 법 수단”, 경제규제와 법 제9권 제2호, 2016. 11.
- Christopher Koopman, Matthew Mitchell, Adam Thierer, The Sharing Economy and Consumer Protection Regulation: The Case for Policy Change, The Journal of Business, Entrepreneurship & the Law, Volume 8 | Issue 2, 2015.5.



눈앞에 다가온 5G 시대,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5G, XR(확장현실) 시대

한세희 / 동아사이언스 데일리뉴스 팀장

<Keyword>

5G, 이동통신, 초고속인터넷,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1. 들어가며 -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선보인 5G 기술

최근 막을 내린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각국 선수들의 실력 경쟁만큼이나 세계 기업들의 기술 경쟁도 뜨거운 무대였다. 올림픽은 본래 당대 첨단 기술의 경연장이긴 하지만, 이번 평창 올림픽에서 특히 관심을 모은 것은 바로 차세대 이동통신 5G 기술이었다.

최근 더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는 영상을 전송하는 것을 넘어 드론, 가상현실 등의 기술과 접목해 새로운 콘텐츠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노력이 한창인데다, 지난해 기술 개발과 표준화 작업을 거쳐 이제 5G 기술이 어느 정도 시장에 모습을 드러낼 수준이 되었기 때문이다.

KT 등 국내 통신사들은 평창에 체험 센터를 만들고, 5G 기술을 적용한 서비스와 콘텐츠를 선보였다. 피겨 스케이팅 선수의 점프를 100여 대의 카메라로 동시 촬영한 뒤 찰나의

순간을 다양한 각도에서 연속동작으로 생생하게 보여주는 ‘타임 슬라이스’, 시속 150km로 달리는 봅슬레이에 달린 카메라로 비취는 선수의 시점을 실시간으로 전달해 주는 ‘싱크 뷰’ 등이 5G 통신 기술로 인해 가능했다. 평창 동계올림픽은 5G의 잠재력을 미리 맛볼 수 있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했다.

2. 5G란 무엇인가

5G는 4세대 LTE를 이어 세계 통신 업계가 준비하는 차세대 이동통신 표준이다. 세계 이동통신 관련 기업들의 연합 모임인 3GPP (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2017년 12월 5G-NSA (Non Stand Alone)이라는 이름의 첫 표준 초안을 발표했다.

5G는 최대 속도가 20Gbps로, 현재 LTE 속도 400~500Mbps보다 40~50배 빠르고, 처리 용량도 100배 많다. 휴대폰으로 1~2초만에 영화 한편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속

도다. 3.5GHz와 4.5GHz 대역의 주파수, 28GHz 및 39GHz 대의 밀리미터웨이브 극초단파 주파수 등이 쓰인다.

5G 통신은 단순히 기존 3G나 LTE보다 속도가 빨라지거나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는 데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다. 기존 통신 방식보다 응답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 통신 지연을 최소화하는 ‘초저지연 통신’ (Ultra Low Latency)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는다.

응답속도는 서로 통신하는 기기들 사이에서 신호가 도달하는 속도를 말한다. 응답속도가 빠를수록 더 많은 정보를 더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다. 보통 응답속도가 10밀리초, 즉 100분의 1초 수준이면 실시간 통신으로 간주한다. 무선랜은 4~5밀리초 정도의 빠른 응답속도를 낼 수 있지만 네트워크에 연결된 기기가 늘어나면 안정성이 떨어진다. LTE는 동시에 많은 숫자의 기기를 연결할 수 있지만 응답속도는 30밀리초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5G는 0.25밀리초까지 응답속도를 낮출 수 있다. LTE와 무선랜의 장점을 함께 가진 초고속 무선 통신이 등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의 통신 기술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생생한 가상현실, 다수의 기기가 데이터를 주고받는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나 드론의 군집 운행 등도 가능해진다.

3. 5G 기술이 만들어갈 세상

아주 많은 기기들이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초저지연 통신 기술은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가. 도시와 환경의 변화 촉진하는 만물의 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미래의 이상적인 자율주행차량은 자체 카메라나 센서, 라이다 장비를 통해 얻는 데이터는 물론 인근의 다른 자동차, 거리의 신호등이나 센서 등과 주고받는 데이터를 통해 안전 운전을 위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위험 신호를 차량들이 실시간 공유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다면 사고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어떤 차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근처로 오는 차들은 물론 소방서와 경찰서에도 바로 정보를 전송해 다른 차들은 다른 길로 우회하게 하고 구급차 출동을 요청할 수도 있다. 5G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과 다른 모든 것을 연결하는 V2X (Vehicle-to-Everything)을 구현할 수 있다.

이와 연결되는 것이 사물인터넷이다. 세상 모든 사물이 센서와 데이터 송수신기를 갖추고 다른 모든 기기와 서로 정보를 주고받게 된다. 수십억 개의 크고 작은 디바이스들을 매끄럽게 연결해 주는 역할을 5G 통신 기술이 맡게 된다. 여기서 나오는 빅데이터는 우리 삶을 더 편리하게 하는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된다. 서로 정보를 교환하며 안정성을 높이는 자율주행 자동차, 미세먼지나 환경오염 정도를 측정하고 개선책을 제안하는 기술, 도시의 위험 요소를 미리 발견해 고치는 서비스, 에너지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기술 등이 등장할 수 있다.

눈앞에 다가온 5G 시대,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무엇인가
-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5G, XR시대



나. 실감미디어로 인식의 확장 가능케 하는 5G

5G 기술로 가능해진 실감 미디어의 효과도 기대를 모은다. 지금의 동영상보다 훨씬 생생하고 몰입감 높은 가상현실 (VR) 및 증강현실 (AR) 콘텐츠가 가능해진다. 현재의 통신 속도로는 일반 멀티미디어 콘텐츠보다 용량이 4 배 가까이 큰 VR이나 AR 콘텐츠를 제대로 소화할 수 없다. 하지만 대용량 데이터의 실시간 고속 전송을 특징으로 하는 5G 통신이 상용화되면 상황이 달라진다.

직접 참여해 실감나게 즐길 수 있는 게임이나 영화, 현장에 가 있는 듯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훈련 콘텐츠 등을 구현할 수 있다. 의대생들의 수술 실습용 VR 콘텐츠, 제조 라인에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원격 AR 지원 프로그램 등이 가능해진다.

보다 정확한 원격진료도 현실이 된다. 일본 NTT도코모는 최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MWC 2018에서 5G 기반 원격진료 기술을 선보였다. 멀리 떨어진 병원들이 의료 관련 영상을 실시간으로 주고받고 진단을 받을 수 있다. 시골이나 중소도시에는 의사나 의료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큰 병원으로 가야 하지만 이동하기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 유용할 것이다. 멀리 떨어진 도시의 종합병원에서 시골에 있는 환자를 실제 눈앞에서 진료하는 것처럼 상태를 확인하고 진단할 수 있다.

이 회사는 포크레인을 원격 조종으로 제어하는 모습도 공개했다. 위험한 공사 현장에 사람이 갈 필요 없이 5G 기술로 전송되는 생

생한 영상을 보고 외부에서 명령을 내려 제어하는 것이다. 좀 더 나아가 화재나 건물 붕괴, 지진이나 원전 사고 등의 극단적 상황에서 외부에서 로봇을 실시간 제어해 구조 작업을 할 수도 있다.

4. 나가며

5G 통신은 단순히 더 빠른 모바일 통신만을 의미하진 않는다. 더 빨리, 더 많은 대상과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인간이 경험하고 제어하는 현실은 훨씬 더 확장된다. 5G 기반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운전자는 자신이 운전대를 잡은 자동차를 넘어 인근의 모든 자동차와 도시 시설물과 연결된다. 의술을 배우는 학생은 교실에서 수술실을 체험할 수 있다.

지금은 컴퓨팅 기기에만 연결된 인터넷이 조만간 세상 모든 사물에 연결되어 디지털 기술과 실제 생활이 만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 5G는 이 같은 4차 산업혁명을 가능하게 할 핵심 요소 기술이다.

5G는 아직 현실보다는 청사진을 더 많이 보여주는 상태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술과 비즈니스와 일상을 결합해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상력을 뒷받침할 기반이 된다. 3G와 LTE로 이어지는 통신 기술의 발달이 스마트폰으로 상징되는 오늘의 모바일 세상을 만들어냈듯, 5G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모든 것이 연결되는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낼 것이다. KISO JOURNAL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와 정책적 예방·해소 노력

엄나래 / 한국정보화진흥원 수석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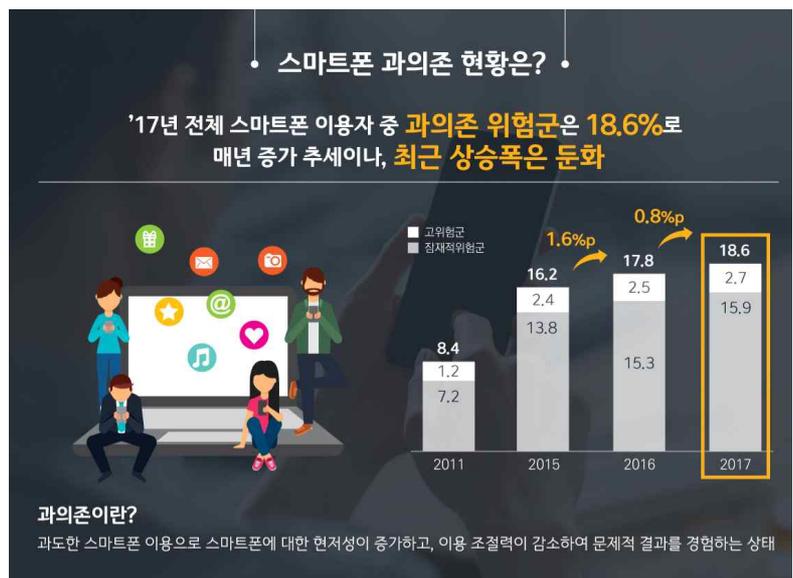
<Keyword>

스마트폰 과의존, 스마트폰 중독, 과의존 정책

2017년 국내 스마트폰 이용률¹⁾은 87.8%로 '16년 83.6% 대비 지속 증가 추세이다. 특히 10대 부터 50대의 스마트폰 이용률은 97%에서 99.8% 까지 나타나 청소년부터 중·장년층까지 거의 모든 인구가 스마트폰 이용에 기반한 생활을 하고 있다. 3~9세 저연령층과 60대 이상 고연령 층의 스마트폰 이용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아부터 노년에 이르는 전 연령대의 스마 트폰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에 기반한 일상생활양식이 보편화되면서 스 마트폰에 대한 기능적 의존을 넘어 심리적·습관적 의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실제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 5명 중 1명 정도는 과도한 스마트폰 이 용으로 인한 역기능을 경험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²⁾』결과에 따르면 국 내 만3~69세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이 18.6%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시작한 '11년 8.4%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지속 증가 추세이나 최근 들어 상승폭은 다소 둔화된 양상이다. '17년 스마트폰



[그림1]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그래프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인터넷진흥원(2017). 『2017년 인터넷이용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05호)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2017).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 제120019호)』

과의존 위험군 18.6% 중 고위험군은 2.7%, 잠재적 위험군은 15.9%로 나타났다. 매년 고위험군은 3% 미만인데 반해 잠재적 위험군은 이의 5배 이상인 15.9%임을 감안할 때,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인한 병리적 문제 보다는 습관적 과다사용이과의존 위험군 증가의 주된 원인으로 고려된다.

○ 스마트폰과의존 개념

스마트폰과의존³⁾ 위험은 ‘과도한 스마트폰 이용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현저성이 증가하고, 이용 조절력이 감소하여 문제적 결과를 경험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현저성(salience)은 개인의 삶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생활패턴이 다른 행태보다 두드러지고 가장 중요한 활동이 되는 것을 의미하고, 조절실패(self-control failure)는 이용자의 주관적 목표 대비 스마트폰 이용에 대한 자율적 조절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문제적 결과(serious consequences)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신체적·심리적·사회적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세 가지 핵심 하위요인을 모두 보이는 집단은 스마트폰과의존에 대한 고위험군으로, 한, 두 가지 하위요인 특성을 보이는 집단은 잠재적 위험군으로 분류한다.

과의존 개념은 기존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중독⁴⁾’에 대한 대체개념으로, 건강하고 생산

적인 정보 활용 촉진 및 바른 ICT 이용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프레임 변화를 반영한 것이다. 기존의 스마트폰 중독 개념은 인터넷 중독⁵⁾ 개념을 차용하여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를 핵심요인으로 한 정신병리적 접근에서 시작되었으나, 모바일 확산 이후 기술환경 변화에 반응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문제행동 특성을 반영하고 포괄하기에 점차 부적합한 개념이 되었다. 예컨대, 모바일기반 지능형 기술이 개인의 삶 속에 깊숙이 내재화되어가는 상황에서 스마트폰에 대한 금단과 내성은 불가피하다. 여타의 중독에서는 중독유발 물질 혹은 행위를 끊는 것을 치료목표로 하지만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한 ICT 이용은 사용억제 보다는 바람직하고 생산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진화하는 ICT 환경에서 인간과 기술 간의 상호작용을 시의적으로 설명하고 포괄 할 수 있는 개념 변화가 요구되었다. ICT기반 생활양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 이용자의 심리사회적 역기능을 시의적으로 설명하고, 스마트폰 이용을 억제 하기보다 균형적 조절능력을 도와 궁극적으로 의미 있고 생산적인 디지털 이용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재개념화한 것이과의존 개념이다.



3) 한국정보화진흥원(2016). 『2016년 정보문화포럼 정책연구보고서』,
4) 인터넷(혹은 스마트폰) 중독 개념에 대한 합의된 학문적 정의나 명확한 진단 기준은 부재한 상황으로 여러 연구자들이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제안하고 있다. 다만, 다양한 콘텐츠 중 게임에 대해서는 『정신질환의 진단 및 통계 편람 제5판(DSM-5)』(APA, 2013) 연구부록에서 ‘인터넷 게임 장애’로 제안되었고, 최근(‘18년) WHO는 국제질병분류기호 개정(ICD-11)에서 게임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등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5) ‘인터넷을 과다사용하여 인터넷 사용에 대한 금단과 내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상생활의 장애가 유발되는 상태’(한국정보화진흥원, 2002년)

○ 과의존 현황의 인구학적 특성

과의존 현상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아동(만3~9세)의 과의존 위험 증가률이 가장 뚜렷하다. 유아동의 스마트폰 과의존 현상을 처음 조사한 '15년에는 12.4% 였는데 '17년에는 19.1%로 6.7%p 증가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청소년은 '15년 31.6%(최고치)에서 '17년 30.3%로 1.3%p 감소하여, 전 연령대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으나 소폭 감소 추세이다. 최근 스마트폰 이용률이 지속 증가하고 있는 성인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15년 13.5%에서 '17년 17.4%로 3.9%p 증가하여 계속 상승하고 있다.

성별로는 여성 과의존 위험군이 남성에 비

해 지속적으로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가구 내 구성원 중 부모-자녀 관계를 분석한 결과, 부모가 과의존위험군인 경우 유아동 및 청소년 자녀도 위험군에 속하는 비율이 부모가 일반사용자군인 경우 보다 높게 조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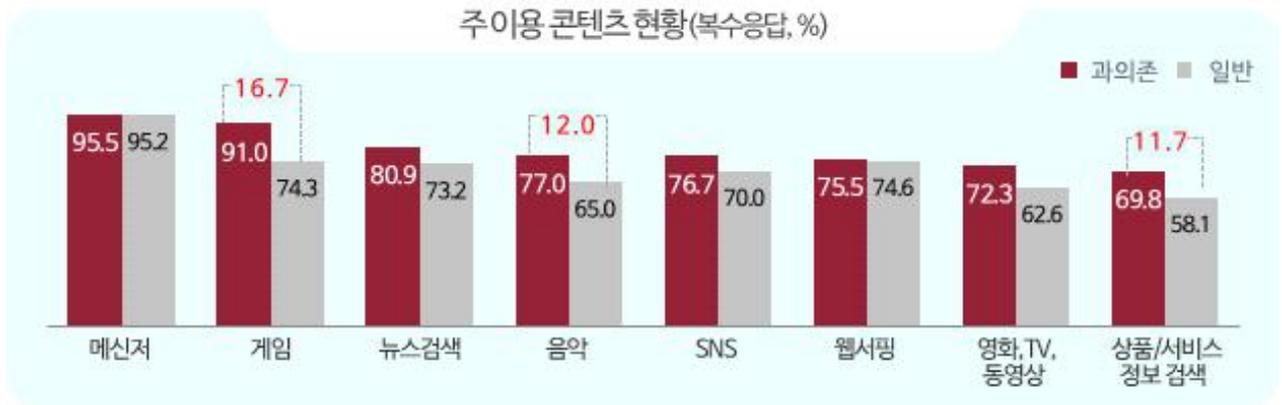
과의존 개념의 3개 하위요인(조절실패, 현저성, 문제적 결과)에 대한 대상별 과의존 위험군의 경험 현황을 살펴보면, 유아동은 현저성을 가장 많이 지각하고 다음으로 문제적 결과, 조절실패 순으로 경험하는 반면, 청소년과 성인은 조절실패를 가장 크게 인식하고 다음으로 현저성, 문제적결과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경험하는 과의존 양상에 차이가 있었다.



[그림2] 연령대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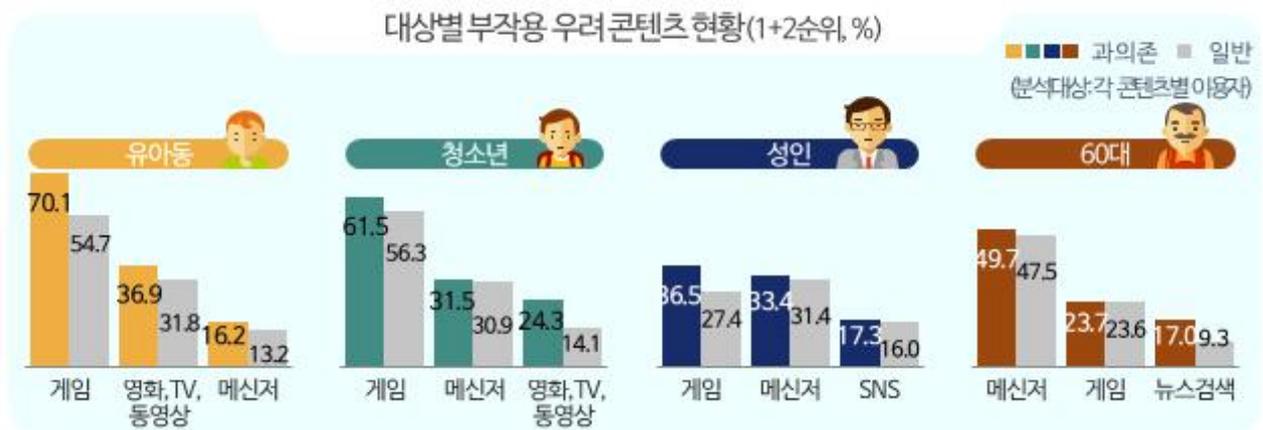
○ 과의존 현황의 콘텐츠 특성

과의존 위험군의 스마트폰 주이용 콘텐츠를 살펴보면 메신저(95.5%)를 가장 많이 이용하였고, 다음으로 게임(91.0%), 뉴스검색(80.9%), 음악(75.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간에 콘텐츠 이용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게임(16.7%p), 음악(12.0%p), 상품/서비스 정보검색(11.7%p) 으로 조사되었다.



[그림3] 주이용 콘텐츠 현황

부작용이 우려되는 콘텐츠에 대해 과의존 위험군은 게임(43.1%)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가장 많이 보고하였고, 다음으로 메신저(32.7%), 영화/TV/동영상(17.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의존 위험군과 일반사용자군 간에 부작용 우려 콘텐츠 인식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것은 게임(11.1%p), 뉴스검색(2.9%p) 이었고, 웹서핑에 대한 부작용 우려는 일반사용자군이 더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의존 위험군 중 유아동(70.1%), 청소년(61.5%), 성인(36.5%)은 게임 부작용을 가장 우려하였고, 60대는 메신저(49.7%) 부작용을 가장 걱정하였다.



[그림4] 대상별 부작용 우려 콘텐츠 현황

○ 스마트폰 역기능 및 순기능 인식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한 날의 학업·업무 성취 수준은 평소 1일 성취 수준의 60%대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한 날 청소년 과의존 위험군의 지각된 학업성취 수준은 64%, 성인 과의존 위험군의 업무성과 수준은 67%로 나타났다. 한편, 과의존 위험군이 일반사용자군에 비해 스마트폰을 통한 지식역량 강화, 대인관계 돈독, 사회공헌활동의 순기능을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스마트폰 과의존 해소 노력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해결방안으로 개인 수준에서는 대체여가활동, 과의존 관련 교육 혹은 상담서비스 이용, 가족 및 친구 등 가까운 사람의 조언과 협조 순으로 보고하였다. 정책적으로는 과의존 위험군의 경우 예방교육 및 상담기관의 확대, 교육프로그램 이용확

대(34.6%) 순으로 응답하였고, 일반사용자군은 홍보와 정보제공(40.1%)에 대한 정책적 요구가 가장 높았다.

정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합동으로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2018년 중점 추진방향⁶⁾은 첫째, 유아 과의존 위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 및 예방교육 강화, 둘째, 부모·교사·전문 인력 교육을 통한 스마트폰 바른 사용 환경 조성, 셋째, 치유 중심의 상담과 더불어 ICT 역량강화 상담 도입으로 서비스 다원화, 넷째, 공공, 학계, 종교계, 민간, 시민사회 참여 스마트쉼 문화운동 확산이다. 2019년에는 제4차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종합계획(2019-2021)⁷⁾을 수립, 이에 근거하여 건강하고 바른 디지털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인공지능(AI) 중심의 지능정보기술이 일상 저변에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고 지원 할 수 있는 시의적이고 통찰력 있는 정책 추진이 요구된다.

KISO JOURNAL



[그림5] 과의존 해소를 위한 방안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합동(2018). 『2018년도 스마트폰·인터넷 바른 사용 지원 추진계획』
 7) 법적근거 : 「국가정보화기본법」제30조(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계획 수립 등)에 의거 관계부처 합동으로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미국의 콘텐츠 규제 한국과의 차이점은 : All Things in Moderation 2017 컨퍼런스를 다녀와서

나현수 /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팀장

<Keyword>
콘텐츠 규제, 해외사례

1. 들어가며

흔히 미국하면 표현의 자유가 우선인 ‘수정헌법 1조의 나라’ 로 기억한다. 실제로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고, 시민사회의 폭넓은 이를 지지하는 문화가 있는 나라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런 미국에서도 인터넷 상에서 ‘무조건 표현의 자유’ 만을 지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터넷 게시판 등 이용자가 작성한 콘텐츠는 수많은 사람이 콘텐츠를 작성한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훌륭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제공하는 이용자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강한 욕설을 하는 이용자, 확인되지 않은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는 이용자, 성인물을 올리는 소위 ‘불량 이용자’와 ‘불량 콘텐츠’가 존재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량 이용자 작성 콘텐츠’에 대해 아무도 관리하지 않는다면, 양질의 콘텐츠를 작성하는 이용자들도 떠나가게 되고, 그렇다면 어떠한 서비스라도 제대로 운영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이러한 ‘불량 이용자’를 관리할까? 당연히도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중시하는 풍토상 온라인 서비스의 운영인력이 콘텐츠의 관리/제외업무를 수행한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았다. 하지만 이용자 작성 콘텐츠가 다양하게 작성되는 현재와 같은 시기에 이러한 관리의 중요성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고, 미국 UCLA의 정보학부 새라 T 로버츠(Sarah. T. Roberts) 교수는 이를 ‘상업적 콘텐츠 관리(Commercial Contents Moderation)라는 조어를 통해 설명했다. CCM 업무는 소셜미디어 등의 이용자들이 업로드하는 사진/영상/텍스트 등을 검토하고 필터링하는 업무 등을 통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CCM에 관련된 최초의 학회가 지난 2017년 12월 6일에서 7일까지 미국 로스엔젤레스에 위치한 UCLA에서 개최되었다. 필자는 한국의 검색어 서비스 운영 공정성을 위한 노력이라는 주제로 KISO의 검색어 검증위원회 사례를 발표하기 위해 참여하였다.

2. 실증적인 논의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인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기초연설로 시작된 1박 2일의 컨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주요 세션이 개최된 UCLA의 찰스 영 연구도서관(Charles E. Young Reserch Library)에서는 미국 각지에서 도착한 다양한 참가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본 컨퍼런스의 큰 특징은, 한국과는 달리 규제에 대한 법학적 규제적 관점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의 기초연설에서는 콘텐츠 관리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게 하기 위한 원칙 등에 대한 설명이 진행되었으나 이뿐이었다. 이후 컨퍼런스에서는 말그대로 실증적인 논의 위주로 진행되었다.

실제적인 사례로서 가장 필자의 관심을 끈 사안은 이용자의 콘텐츠 관리를 위한 툴 개발의 실제 사례에 대한 소개와, 이용자의 자발적 콘텐츠 관리의 한계를 설명한 사안이다. 미국 MIT의 클라우디아 로(Claudia Lo)가 발표한 콘텐츠 관리 툴의 개발 실제 사례의 경우 이용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온라인 스트리밍 방송인 Twitch에서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이용자를 차단(Ban)하기 위한 툴을 실제 개발하고, 이를 사용한 결과를 보고한 사례였다. 특히 인터넷 방송의 특성상 댓글이 실시간으로 작성되고 공개되는 측면이 있어 빠른 선택이 필요하다. 클라우디아 로는 복수의 자발적 관리자가 합의된 실시간 투표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의 글을 검토하고 빠르게 이를 검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소개하였다. 실제로 기존의 운영 툴을 통한 방식보다 20% 정도 더 효율적으로 악성 댓글을 막을 수 있다는 실증결과도 제시하였다.

또한, 미국의 거대 커뮤니티 래딧(Raddit)의 역사 채널(AskHistorian)에서 이루어진 자발적 콘텐츠 관리에 대한 내용 역시 이용자들이 어떻게 조직되어 자발적으로 콘텐츠를 관리하자는 목표를 세우는지부터, 그들이 어떻게 규칙을 만들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재를 취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이를 발표하였다. 커뮤니티의 특성상 역사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는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지나친 가상 질문, 학생들의 숙제를 위한 질문, 스팸이나 특정인을 공격하는 질문 등이 지속적으로 작성되어 원래 취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검토에 따라 자발적으로 조직된 관리자(Moderator) 집단이 규칙을 정하고 이에 대해 집행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이용에 대한 좋은 관리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3. 누가 콘텐츠를 관리하는가?

본 컨퍼런스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안은 또한 콘텐츠 관리 업무에 대한 고찰이다. 미국의 소셜 미디어의 성공에는 이러한 콘텐츠 관리자의 역할이 있었다는데,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관리하는 콘텐츠 관리자는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부적절한 콘텐츠에 노출되어 있으며, 노동 상황은 매우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특히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하는) 제3국에 위치하는 관리자들이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자발적 콘텐츠 관리, AI를 통한 관리 등이 검토되었다. 사람에 콘텐츠 관리의 단점 즉 사람으로서의 편견(Bias)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AI등 콘텐츠 자동화가 폭넓게 논의되었으나,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콘텐츠 관리의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과연 AI는 편견이 없는가에 대한 문제에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현재 기술로서 콘텐츠 관리를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서의 자동화는 가능하지만, 전적으로 자동화를 통한 콘텐츠 관리는 일정부분의 한계가 있다는데 참석자들은 공감하는 것으로 보였다.

4. 한국의 사례에 대한 관심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는 기조연설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누구나 시민의 권리로서 표현의 자유를 영위하여야 하기 때문에, 사기업은 1.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규칙을 제정하고, 2. 이용자의 자치, 이용자에 의한 제어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며, 3. 투명성을 확보하고, 4. 업계의 자율규제를 통해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발제한바 있다.

이런 측면에서 KISO가 발표한 ‘네이버 검색어 검증위원회’ 관련 사항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KISO는 업계 공통 정책규정(Code of Conduct)을 마련하여 검색어 규정을 공동으로 만들었는데 그 원칙은 이용자와 피해자의 권리를 모두 합리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향이었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네이버 자체가 아닌 KISO를 통해 검색어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콘텐츠 관리는 이용자를 위한 일종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그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KISO에서 발표한 검색어 검증위원회 관련 사안에 대해 신선하다는 반응이 많

았다. 기업의 콘텐츠 관리 원칙을 공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제외사례를 외부 전문가를 통해 검증 받고 이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측면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다만 데이비드 케이 기조연설에서 말한 이용자의 자치(Autonomy)에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하였다.

5. 한국과의 큰 차이점

발표를 비롯해 이틀간의 9시부터 6시까지 계속되는 빡빡한 컨퍼런스 일정에서, AI 자치, 투명성, 공정성 등 다양한 이슈가 논의되다 보니 막상 컨퍼런스를 참여할 때는 느끼지 못한 사항이지만, 마치고 나서 보니 한국과의 큰 차이점이 느껴졌다. 이 학계와 업계, 언론계를 아우르는 다양한 논의 속에 정부의 역할이나 정부의 참여자, 정부 규제에 관한 논의는 애초에 다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업계는 서비스에서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책임이자 사업의 주요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어 자체 콘텐츠 자율규제에 적극적이고, 언론과 학계는 이에 대한 다양한 모델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다만 이에 대해 공적규제나 정부 차원에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논의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미국은 콘텐츠의 규제가 오히려 다양한 이용자들이 더 폭넓은 의미의 표현의 자유 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전제에서 접근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에 의한 표현의 자유 규제는 (연방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애초에 검토나 논의대상이 되는 사안이 아니었다는 점이 한국과의 큰 차이로 느껴졌다. 오히려 거대화된 소셜 미디어 회사가 콘텐츠 관리라는 목표 하에 사적검열을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경고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반해 한국은 국가 주도하에 법률을 통해 어떠한 규제를 수행하는 방식을 우선적으로 도입해왔다. 모든 사이트는 서비스 특성과 무관하게 임시조치 제도를 마련해야하고, 일정한 불법 콘텐츠를 삭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 심지어 최근에는 다시 실명제를 도입하는 법안도 상정되어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러한 규제방식은 분명 통일되고 안정된 권리침해를 막는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장점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콘텐츠의 관리도 중요한 사업의 수단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인식은 분명 낮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자치를 통한 규제, 서비스 성격에 맞는 다양한 기술적 방식을 통한 규제 등 콘텐츠 관리의 혁신이 가능한 환경이라 믿는다. 오히려 이러한 혁신을 저해하는 것은 공적 규제가 아닌지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다. KISO JOURNAL



▲ 미국 UCLA 정보학부 주관,
All Things in Moderation : The People, Practices and Politics of Online Content Review
-Human and Machine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 (기술은 어떻게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 왔는가)

김훈건 / SK커뮤니케이션즈(주)(법무팀, 팀장)

〈Keyword〉
4차 산업혁명, 과학 기술, 문화적 변화

제 목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기술은 어떻게 사회와 역사를 변화시켜 왔는가)		
저 자	토머스 J. 미사 저	역 자	소하영
출판사	글램북스	출간일	2015년 11월 20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근래 여러 군데에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7. 5.에 앞당겨 치러진 대통령 선거의 주요 후보자들 모두 ‘4차 산업혁명’에 관한 나름의 공약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약대로 2017. 9.경 대통령직속기구인 ‘4차 산업혁명위원회’¹⁾가 설치되었다. 정부 기관과 그 산하 단체들이 발주하는 용역 과제의 주제 가운데 그 어딘가에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듯하다. 약간의 과장을 하면, 나라 전체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물결에 휘말려 들어가 있어, 곧 다가올 새로운 산업혁

명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만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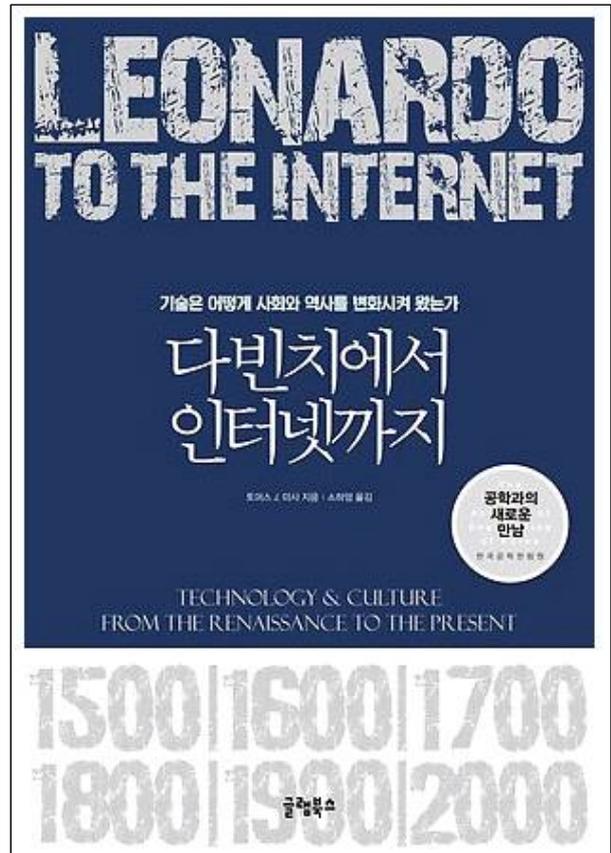
한편, ‘4차 산업혁명’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실체 모호한 유행”이라고 일축하는 비판론도 있다. 이러한 비판론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론은 사회 속의 과학기술 전반이 아니라 특정 정보통신 기술에 주목하게 하며, 기술이 발전하면 산업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할 것이라는 ‘기술결정론’식의 발전관에 따라 나타난 현상이라고 진단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써, 사회를 합리적으로 변하게 하려는 노력에 중점을 두는

1)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28250호, 시행 2017. 8. 22.

방식으로 정보통신기술과 과학기술의 역할을 설정하여야 하며, 단순하고 조급한 추격형(catch-up) 정책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기초 과학에 투자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²⁾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견해는 테렌티우스(Publius Terentius Afer)의 격언³⁾처럼 사람 수만큼 다양할 수 있다. 그런데, 이렇게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나타나는 근원적 이유는 과학기술이 사회·정치·경제·문화적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믿음과 빠르게 변화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되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학기술에 대한 불안감의 극복과 근원적 통찰을 단 한권의 책으로부터 모두 얻을 수는 없겠지만, 토마스 J. 미사(Thomas J. Misa)의 『다빈치에서 인터넷까지』를 통하여 적어도 그 단서를 얻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원제의 부제(Technology and Culture From the Renaissance to the Present)와 같이, 르네상스 시대부터 현재(2010년)까지의 기술과 문화의 역사와 상호 연관 관계를 기술하고 있다. 저자는 이 책에서 르네상스 시대부터 연대별로 기술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기술이 나아갈 다양한 범위와 방향의 연구에 필요한 견고한 경험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자는 기존의 산업혁명에 대한 도식적이고 피상적인 이해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논거와 다층적인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그 본원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제1차 산업혁명에 대한 미사의 설명은 기존의 일반적인 설명과 구별된다. 저자는 18~19세기에 나타난 산업혁명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국의 증기기관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은 통념과 달리 증기기관이 도입된 이후에도 여전히 물(水), 동물, 인간의 힘이 영국 제조업의 가치 향상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던 상황을 그 논거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영국 이외의 국가들도 자국의 사정에 따라 산업혁명으로 가기 위한 나름의 루트를 선택하여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하여 왔으므로, 제1차 산업혁명을 영국의 증기기관 기술과 이를 적용한 방적과 직물산

2) 홍성욱 기획, 김소영, 김우재, 김태호, 남궁석, 홍기빈 홍성욱 지음(2017), 『4차 산업혁명이라는 유령』, Humanist.
 3) Quot homines, tot sententiae(사람 수만큼 생각도 다르다)(에라스무스 저, 김남우 옮김(2014), 『격언집(Adagia)』, 부북스, 70면).

업의 발전으로 한정하여 이해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이 정치, 경제, 문화 등에 영향을 주었지만 반대 방향으로도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에 관한 저자의 생각은 새로운 것이 없는 것 같으면서도 새롭게 느껴지게 한다. 과학기술 자체가 변화의 ‘원인’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변화의 ‘동력’이자 그것의

‘산물’이라는 저자의 관점에 서서 다시 우리가 처한 상황을 둘러봤다. 이내, “몇 가지 분야의 과학기술 확보를 통해 패권(hegemony)을 선취하고, ‘경제성장과 사회문제해결을 함께 추구하는 포용적 성장으로 일자리를 창출할 뿐만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⁴⁾”는 생각을 이 책의 저자인 미사가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한 궁금증이 나타났다. KISO JOURNAL

4)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참조.

2018년 KISO 워크숍 개최



KISO는 지난 2018년 2월 2~3일 이틀에 걸쳐, 제주 카카오 스페이스닷투에서 KISO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KISO의 정책위원, 저널 편집위원, 온라인광고 심의위원, 검색어 검증위원 및 회원사의 여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KISO’, ‘이용자를 보호하는 KISO’,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KISO’라는 세 가지의 큰 주제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논의의 시간을 가졌으며 앞으로도 KISO는 인터넷 자율규제에 대한 논의와 협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KISO·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회 공동 토론회 개최,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 주의 : 여론공간의 규 제는 필요한가?’

2018년 3월 29일(목) 한국프레스센터(19층)에서 KISO와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회는 ‘인터넷 댓글에서의 정치행동 주의 : 여론공간의 규제는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조화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제1발제자로 나은영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온라인에서의 여론공간의 양극화와 그 원인’이란 주제로 미디어 심리학적 관점에서 인터넷이 격론의 장이 되는 현상에 대해 발제하였으며, 제2 발제자로 정필운 한국교원대학교 일반사회교육과 교수가 ‘인터넷 여론 공간 관련 규제 이슈’에 관해 헌법적 관점에서 발제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정일권 광운대학교 미디어 영상학부 교수, 조소영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학과 교수(가나다순)가 온라인 공간에서의 양극화와 인터넷 여론 공간 관련 규제에 관련하여 전문적인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며 열띤 토론을 펼쳤다.

KISO는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터넷 댓글에서의 양극화 현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KISO저널 제30호>

발행일 2018.03. 30.

발행인 임지훈

발행처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표지디자인 신원디마

06159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7층

(삼성동 143-37, 현대타워)

대표전화 02.6959.5206

대표메일 kiso@kiso.or.kr

홈페이지 www.kiso.or.kr

저널 홈페이지 journal.kiso.or.kr

◆ KISO저널에 게시 및 수록된 글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공식
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 KISO저널 30호의 본문은
'한겨레결체'로 작성되었습니다.

◆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허가
없이 본 내용의 무단전제나 복제를
금지합니다. 내용에 관한 문의가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6959.5204)

<편집위원>

황창근 교수(홍익대 법학과)

권현영 교수(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김유향 팀장(국회입법조사처 과학방송통신팀)

김효섭 부장(네이버 경영지원실)

김훈건 팀장(SK커뮤니케이션즈 경영전략실)

최창근 차장(카카오 정책협력팀)

윤혜선 교수(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구본권 소장(한겨레 사람과 디지털연구소)

편집간사/박기욱 연구원(KISO 기획협력실)



ISSN 2287-8866(Online)